

부천연구원 설립변경(안)

개 요

- 명 칭 : 부천연구원
- 형 태 : 비영리재단법인
- 기 구 : 연구부, 관리부
- 인 력 : 18명(원장1명, 연구부장1명, 관리부장1명, 수석연구원2명, 연구원10명, 사무원3명)
- 재원조성 : 시 출연금 및 보조금
- 기 능 : 시정의 장·중·단기계획 수탁조사연구
 시정의 주요현안 및 당면과제 자체조사연구
 조사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

1. 기본방침

- 부천지역 연구를 목적으로 함
- 부천시정의 능력을 보완하여 그 기능 배가에 기여
- 최소조직과 인력으로 최대효과 거양
-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 출연 기금조성 및 보조금 지원

2. 설립 및 운영계획

(1) 설립근거

- 민법 제32조(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)
-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, 동법시행령
- 내무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(2) 기능

《연구부》

- 시정 각 부문에 관한 장·중·단기계획 수탁조사연구

- 시정의 주요현안이나 당면과제에 대한 자체 조사연구
- 조사연구보고서 및 정기 간행물 발간
- 학술행사 및 정보교류 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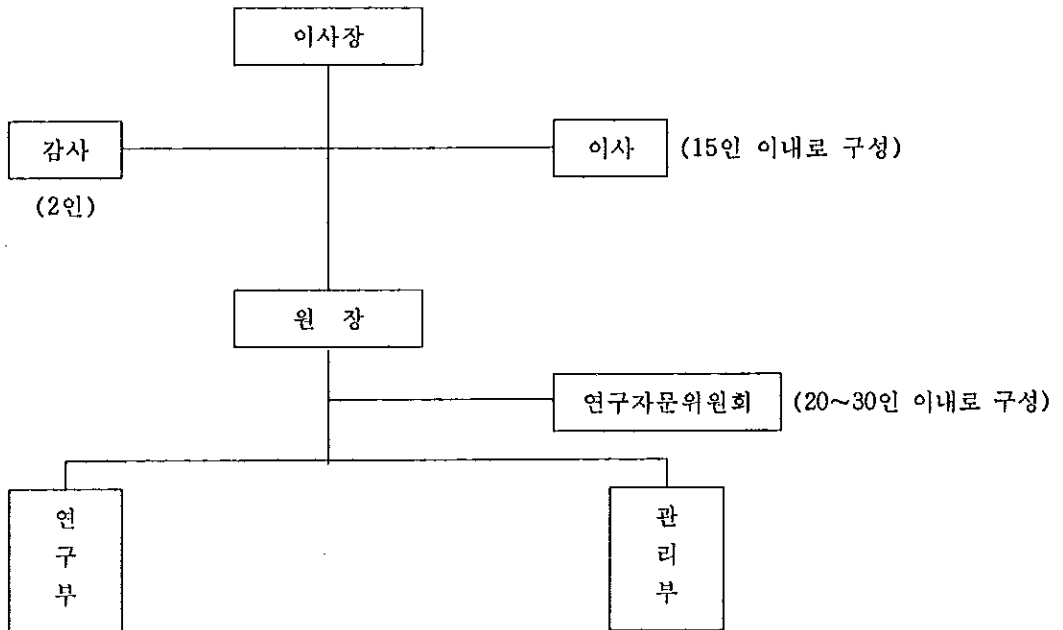
《관리부》

- 행정, 재정적 지원 및 관리
- 이사회 및 연구자문위원회 운영
- 세미나, 공청회 운영
- 예산, 회계, 결산업무
- 관련정보의 자료수집 및 제공

(3) 운영방법

- 연구분야(Projcet)별로 필요 시 상근연구원과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연구원, 관계공무원 등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, 연계하여 공동연구활동전개
- 기본적인 연구과제는 연구원의 기본운영비로 충당하되, 수탁연구과제 및 특수한 용역과제는 실비의 대가를 받고 과업수행

(4) 기구표(안)



(5) 인력

○ 연구직 : 14명(원장1, 연구부장1, 수석연구원2, 연구원10)

※ 분야 : 행·재정, 환경·에너지, 사회복지, 교통, 문화, 도시미학, 생태·도시계획

○ 사무직 : 4명(부장1, 일반사무원2, w/p요원1)

(6) 조직운영

《이사회》

○ 구성 :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

○ 기능 : 연구원 운영의 중요사항 심의·결정

· 사업계획, 예산·결산, 주요재산이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
· 정관변경, 조직기구, 임원임면,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

《감사》

○ 구성 : 2인(당연직 : 재정경제국장, 선임직1인)

○ 기능 : 업무·재산상황감사 및 부정·부당사항보고

《원장》

○ 선임 : 연구와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(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가능)

○ 임무 : 연구원의 업무통관과 소속직원의 임면 및 지휘·감독

《연구자문위원회》

○ 구성 : 구성 : 20~30인 이내(해당분야별 전문가, 관계공무원)

※ 별도 운영관리 규정제정, 구성운영

○ 기능 : 원장의 자문 및 심의

《연구부》

○ 연구부장 :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7년 이상 조사·연구 경력이 있는 자

○ 수석연구원 :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조사·연구 경력이 있는 자

○ 연구원 :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조사·연구

경력이 있는 자

※ 연구부 직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임용 가능

《관리부》

○ 부장 : 4급 이상 지방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(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임용 가능)

3. 세부추진계획

(1) 설립절차 이행

-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발기인 총회
 - 각계각층의 유력인사 및 단체로 구성
 - 시의회 의원, 공무원
 - 대학교수
 - 금융기관, 상공관련단체, 시민단체·종교인 등
 - 연구원 설립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
 - 설립대표(발기인 대표)자 선임
 - 정관작성, 재산출연금방법 결정 등
 - 설립허가신청 : 설립취지서 및 정관 등 구비, 도지사에게 신청
 - 재산이전보고 : 설립허가를 받은 후 재산이전(이전 후 1월 내 보고)
 - 설립등기 : 도지사의 허가를 득한 후 3주 이내(인천지법 부천지원)
 - 설립등기보고 : 등기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(등기부등본첨부)
 - 법인설립신고, 고유번호지정 : 이사장 → 세무서
- ※ 세부일정 : 별첨

(2) 관련자규정 제정

- 부천연구원 정관
- 부천연구원 설치 및 육성조례
- 부천연구원 운영규정

(3) 기금조성 및 운영비조달

- 기 금 : 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최소기금만 조성
- 운영비 : 기금의 과실금 및 시 보조금

(4) 소요예산 _____ 624,300천원

사무실 _____ 15,000천원

-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(원미구 보건소)
- ※ 규모 : 대지 352평, 연건평 485평
- 시설비 : 칸막이 공사 등 보수비 15,000,000

장비 및 집기구입비 _____ 56,700천원

- 컴퓨터 : $3,000,000 \times 3대 = 9,000,000$
- 프린터 : $2,500,000 \times 3대 = 7,500,000$
- 소프트웨어(윈도우95 외) : = 500,000
- 복사기 : $3,000,000 \times 1대 = 3,000,000$
- 팩 스 : $2,500,000 \times 1대 = 2,500,000$
- 전 화 : $500,000 \times 4대 = 2,000,000$
- 테이블 및 의자 : $300,000 \times 13조 = 3,900,000$
 $600,000 \times 1조 = 600,000$
- 서 가 : $200,000 \times 3개 = 600,000$
- 캐비닛 : $100,000 \times 5개 = 500,000$
- 용접세트 : $1,000,000 \times 3조 = 3,000,000$
- TV(VTR겸용) : $1,000,000 \times 3대 = 3,000,000$
- 컴퓨터 책상 및 의자 $200,000 \times 3조 = 600,000$
- 차량구입 : $15,000,000 \times 1대 = 15,000,000$
- 기타장비 : 5,000,000

인건비 _____ 450,600천원

○ 인원구성 : 18명(원장1, 연구부장1, 수석연구원2, 연구원10, 사무원4)

○ 소요예산(년)

- 원 장 : $3,500,000 \times 12\text{월} = 42,000,000$
- 연구부장 : $2,800,000 \times 1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33,600,000$
- 수석연구원 : $2,500,000 \times 2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60,000,000$
- 연구원 : $2,000,000 \times 10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240,000,000$
- 관리부장 : $2,500,000 \times 1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30,000,000$
- 사무요원 : $1,400,000 \times 2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33,600,000$
- W/P요원 : $950,000 \times 1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11,400,000$

운영비

102,000천원

- 사무비 : 월 500,000 × 12월 = 6,000,000
- 회의비 : 50,000 × 20인 × 10회 = 10,000,000
- 평가비 : 15건 × 200,000 × 10인 = 30,000,000
- 세미나·공청회 : 4회 × 700,000 = 28,000,000
- 보고서 작성인쇄 : 6회 × 3,000,000 = 18,000,000
- 기 타 : = 10,000,000

부천연구원설립 세부일정계획

내 용	주 관	추진일정	비 고
○ 연구원 설립 시의회 보고 -총무위원회 -시의회회장 상임위원장단	기획담당관실	97. 5.~6.	
○ 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 보고 -위원구성 -승낙서 징구	기획담당관실	97. 7.~8.	
○ 발기인 창립총회개최 -설립취지문 채택 -정관제정, 이사회구성 -사업계획 및 예산심의	"	97. 9.	
○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	시장 → 도지사	97. 9.	
○ 조례상정	시장 → 시의장	97. 9.~11.	
○ 이사회 개최 -원장, 감사선임 -운영규정심의 -97. 사업계획심의 -97. 예산심의	이사장	97. 9.~11.	
○ 법인설립등기	이사장 → 인천지법	97. 11.	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
○ 법인설립등기보고	이사장 → 도지사	"	등기후7일 이내
○ 출연금(기본재산)명의변경	이사장 → 예탁금융기관	"	이전 후 1월 내 보고
○ 법인설립신고, 고유번호지정	이사장 → 세무서	"	
○ 연구원 발족, 현판식 거행	이사장, 원장	98. 2. 1.	